

2015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공시(예산)

2015. 2.

금정구청장 (인)

- ◆ 우리구의 '15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2,844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1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종단체 평균액(3,814억원)보다 970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77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076억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은 191억원입니다.
- ◆ 우리구의 '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9.87%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3.87%입니다.
- ◆ 우리구의 '15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억원의 적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구의 재정은 동종 자치단체 대비 살림규모, 자체수입의 비중이 낮은 편이고,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채무액은 없어 양호한 편이나 여전히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이 동종 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낮은 편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www.geumjeong.go.kr) 『열린금정⇒예산참여방/지방재정공시(예산)』에서 볼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김 한 나(051-519-4021)

1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 결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종 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① 예산규모	세 입 예 산	284,375	242,713	41,662	381,377	349,381	31,996
	세 출 예 산	284,375	242,713	41,662	381,377	349,381	31,996
	중기 지방 재정 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 자립도	19.87	22.02	△2.15	25.79	27.21	△1.42
	재정 자주도	33.87	37.63	△3.76	42.53	44.23	△1.70
	통합 재정수지	-113	-384	271	416	566	△150
③ 재정운용계획	성인지 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 참여 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동종단체는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 중 금정구는 자치구에 포함됩니다.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5년도 금정구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84,375	270,703	0	10,081	3,591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98,745	220,817	231,209	242,713	284,375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87,270	100	206,518	100	217,866	100	229,123	100	270,703	100
지방세	27,477	14.67	29,971	14.51	32,514	14.92	33,870	14.78	36,302	13.41
세외수입	15,697	8.38	27,858	13.49	25,497	11.7	16,572	7.23	17,498	6.46
지방교부세	5,000	2.67	5,000	2.42	5,000	2.29	5,000	2.18	5,000	1.85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29,880	15.96	29,976	14.51	29,980	13.76	30,780	13.43	32,879	12.15
보조금	109,216	58.32	113,714	55.06	124,874	57.32	133,003	58.05	169,184	62.5
지방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	0	0	0	0	9,899	4.32	9,840	3.63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금정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84,375	270,703	0	10,081	3,591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98,745	220,817	231,209	242,713	284,375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분야별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87,270	100	206,518	100	217,866	100	229,123	100	270,703	100		
일반공공행정	8,724	4.66	13,413	6.49	11,078	5.08	12,103	5.28	10,669	3.94		
공공질서 및 안전	1,667	0.89	1,762	0.85	2,561	1.18	1,298	0.57	4,982	1.84		
교육	259	0.14	344	0.17	348	0.16	629	0.27	862	0.32		
문화 및 관광	10,921	5.83	11,606	5.62	12,637	5.8	9,636	4.21	10,383	3.84		
환경보호	6,649	3.55	10,066	4.87	9,421	4.32	10,611	4.63	11,221	4.15		
사회복지	91,796	49.02	100,033	48.44	110,160	50.56	120,038	52.39	154,336	57.01		
보건	4,069	2.17	4,232	2.05	4,700	2.16	4,903	2.14	6,321	2.34		
농림해양수산	4,508	2.41	3,312	1.6	3,960	1.82	5,646	2.46	3,821	1.41		
산업·중소기업	29	0.02	413	0.2	236	0.11	167	0.07	675	0.25		
수송 및 교통	8,932	4.77	6,726	3.26	6,608	3.03	6,916	3.02	4,077	1.51		
국토 및 지역개발	2,066	1.10	3,239	1.57	3,182	1.46	3,035	1.32	3,609	1.33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1,934	1.03	2,681	1.3	2,616	1.2	2,311	1.01	3,319	1.23		
기 타	45,716	24.41	48,694	23.58	50,358	23.11	51,831	22.62	56,427	20.84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금정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293,894	317,123	306,294	313,708	318,689	1,549,708	2%
자 체 수 입	57,863	58,917	59,603	60,633	61,769	298,785	1.6%
의 존 수 입	212,861	233,329	221,910	227,798	231,233	1,127,131	2.1%
지 방 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3,170	24,877	24,782	25,277	25,687	123,793	2.6%
② 세 출	293,894	317,123	306,294	313,708	318,689	1,549,708	2%
경 상 지 출	70,133	70,230	72,194	74,211	76,192	362,960	2.1%
사 업 수 요	223,761	246,893	234,101	239,496	242,497	1,186,748	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회계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금정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9.8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및등 내부거래 (E)
19.87	270,703	53,800	207,063	0	9,840

-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액
-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23.05	28.00	26.63	22.02	19.87
최종예산	23.89	29.42	27.18	18.69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자체세입 비중은 19.87%, 의존재원 비중은 80.13%로 중앙 및 부산시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이고, 동종 자치단체(25.79%) 대비 재정자립도 또한 낮은 편임.

3-2.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금정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3.8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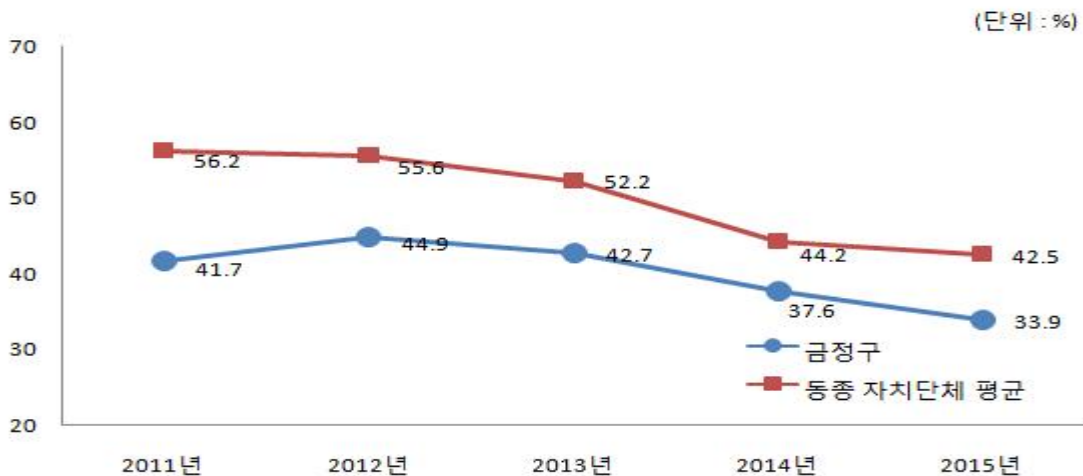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3.87	270,703	91,680	169,184	0	9,840

-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41.68	44.94	42.68	37.63	33.87
최종예산	44.09	45.03	43.05	34.77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자주재원 비중은 33.87%, 보조금의 비중은 66.13%로 정부의 일자리창출 및 복지정책 확대에 보조금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동종 자치단체(42.53%) 대비 다소 낮은 편임. 자체세입 확충은 한정적이라 보조금 의존도는 앞으로도 높아질 전망이다.

3-3. 통합재정수지

-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5년 금정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F
	세입 (A)	지출 (B)	용자 회수 (C)	용자 지출 (D)	순용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65,476	280,987	61	100	39	15,437	281,025	-15,550	-113
일반회계	261,103	270,258	0	0	0	9,600	270,258	-9,155	445
기타 특별회계	4,183	9,981	61	100	39	5,837	10,020	-5,837	0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0	0
기 금	189	747	0	0	0	0	747	-558	-558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용자(용자지출-용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용자)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용자) + 순세계잉여금
-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7,249	-14,829	-13,330	-15,474	-15,550
통합재정수지 2	50	84	-40	-384	-113

- 통합재정수지 1은 15,550백만원 적자이지만 이는 전년도 집행잔액 및 초과세입 등을 나타내는 순세계잉여금(15,437백만원)을 세입에서 제외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는 통합재정수지 2(113백만원)에 비해 적자폭이 다소 크게 나타남. 특히 기금의 경우, 전체적인 재정 규모파악을 위한 내부거래 및 보전거래 차감으로 세입과 지출의 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통합재정수지 적자의 요인으로 볼 수 있음.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금정구의 2015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2	10,360
여성정책추진사업	5	31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6	10,029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	15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www.geumjeong.go.kr/02open/index.php?code=020910>

(금정구 홈페이지 → 열린금정 → 예산참여방/성인지예산서)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금정구는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270,703	72	1

▶ 2015년 당초예산 기준

❖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위원회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지원 기타 부칙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 2015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72	
민원봉사과	회동동 관내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22	신규사업
도시안전과	선동 지하차도 조명등 교체	30	"
건설과	육교 안전 손잡이 설치	20	"